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(증재등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수재등)

[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 12. 14. 2011고합569,606,610(병합)]

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 피고인 1외 10인

【검 사】정대정, 전준철(기소, 공판), 정유철, 신승호(공판)

【변 호 인】 법무법인 태평양 외 7인

【주문】

]

피고인 1, 피고인 2를 각 징역 1년 6월에, 피고인 4를 징역 5년 및 벌금 300,000,000원, 피고인 11을 벌금 5,000,000원에 각 처한다.

피고인 4, 피고인 1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 4에 대하여는 300,000원을, 피고인 11에 대하여는 50,000원을 각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

다만,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 1, 피고인 2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피고인 4로부터 300,000,000원을 추징한다.

피고인 1, 피고인 2, 피고인 4에 대한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, 피고인 1, 피고인 2에 대한 각 피고인 5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증재등)의 점 및 피고인 3, 피고인 5, 피고인 6, 피고인 7, 피고인 8, 피고인 9, 피고인 10은 각 무죄.

[이유]

]

[이유]

1

[이유]

]

[이유]

]

[이유]

]

[이유]

[이유]

1

[이유]

1